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제한적 허용〉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8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준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②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u>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1. <u>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u> 2. <u>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u>
<신 설>	

현행	개정안
	사망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타인의 생명보험”)을 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 즉 피보험자¹⁾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²⁾하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여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³⁾하고 있음(제731조제1항 및 제732조 본문).

○ 다만, 2014년 개정을 통해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①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단체보험(제735

1)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내용이 되는 생명(생존과 사망)에 관한 사고의 대상으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서로 다른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함.

2)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조의34))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제732조 단서).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 형태를 단체보험으로 한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재난·감염병과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으로 국한함으로써 사망보험의 악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점을⁵⁾ 고려할 때, 법체계적인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특정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어디까지나 단체보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가계보험임.⁶⁾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15세 미만자가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책임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족의 충분한 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허부에 관한 논의가 생명보험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다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통상 부모(친권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이 됨(「민법」 제1000조제1항제2호). 따라서 해당 미성년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친권자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같은 법 제913조)를 해태하여 사망에 이른 때에도, 같은 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수익자인 부모가 단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여전히 도덕적 위험은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21. p.939

□ 한편,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732조 단서를 안 제732조제1호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 “심신박약자”는 구 민법 제9조에 따른 한정치산⁷⁾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편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법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15세 미만자를 일정한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개정안들이 2025. 6. 현재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야 할 것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15세 미만자의 피보험자 가능 사유	비고
2203724 (24. 9. 5.)	박상혁의원	○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위원회심사 (소위원회부)

7) 「민법」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8)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각각 구 민법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대응하므로, 구 「민법」의 ‘심신박약자’는 현행 「민법」 제12조에 따른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함. 다만 한정치산자의 경우 행위능력 자체가 제한되었으나 현행 민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되나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13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15세 미만자의 피보험자 가능 사유	비고
2207482 (25. 1. 14.)	강득구의원	○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 ○ 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위원회회부
2207941 (25. 2. 6.)	김은혜의원	○ 재난·감염병 등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계약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으로 한정	위원회회부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15세 미만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인의 악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⁹⁾

현 행	법무부 수정의견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u>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u>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u> 2. 15세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9) 법무부는 이전 항목에서 살핀 3건의 유사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법무부 수정의견
<신설>	④ 제732조 제2호에 따라 15세미만자가 제1항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제2조(적용례) 제732조 및 제735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문의처

02)6788-5055